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94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 다 음 -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민트에어	314-86-*****	인천광역시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주)민트 에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에 관한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에도○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인 (주)민트에어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에 총 2회 게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제2항	과태료 1,20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100-26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